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41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준범(기소), 노영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학(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고단6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금고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피해자 B(남, 3세)은 사망하고, 피해자 C(여, 5세)은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의 골절 등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원심은 피해자 C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는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인 C을 위하여 원심에서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가로 피해를 변제하여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사고의 경위, 각 과실 정도,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해 및 회복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를 기각하지 않는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10-27

재판장 판사 오덕식 _____

 판사 김배현 _____

 판사 정현서 _____